



- 학생생활연구소 산하 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
(학생생활연구소 구내 2303) E-mail: sccouns@uoscc.uos.ac.kr
- 인문학관 1층 5102호 여학생 상담실(구내 2291)로 사건 접수
- 총여학생회
 - 구내 2367
 - 홈페이지로 접수(학교 홈페이지에서 시대인마당 선택 후 접속)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90
전화: 2210-2114 fax: 2210-2303
학생생활연구소

UNIVERSITY OF SEOUL

UNIVERSITY OF SEOUL

성폭력 예방 지침서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학생생활연구소
성폭력예방대책위원회

성폭력 예방 지침서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학생생활연구소
성폭력예방대책위원회

차 례

I.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1. 성폭력 개념의 정의 / 3
2.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몇가지 / 3

II. 성폭력의 유형

1. 언어적 유형 / 5
2. 물리적 행동유형 / 6
3. 적대적 환경 조성 / 6
4.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성폭력 / 7
5. 성적 대상화 유형 / 8
6. 온라인 성폭력 / 8

III. 대학내 성폭력 유형

1. 학내 성폭력의 정의 / 10
2. 교수-학생간 성폭력 / 11
3. 선배-후배 혹은 동기간 성폭력 / 12
4. 그외 성폭력 / 12

IV. 성폭력 피해자들이 받는 영향

1. 심리적 영향 / 13
2. 신체적 영향 / 13

3. 사회적 영향 / 14

V. 성폭력 예방

1.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할 점 / 15
2.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할 점 / 16
3. 데이트시 주의점 / 16

VI. 성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

1. 강간 성폭력 피해 직후의 대처 방법 / 17
2.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일 경우
대처 방법 / 18
3. 비공식적 대처 방법 / 19
4. 공식적 대처 방법 / 19
5. 온라인 성폭력 대처 방법 / 20
6. 피해자의 권리 / 24

VII.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1. 학내 / 27
2. 외부 / 27

부록 1 -대학내 성폭력 사례 모음 / 28

부록 2 서울시립대학교 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 규정 / 36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1. 성폭력 개념의 정의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 및 관계,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생긴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 제약도 간접적 성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2.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몇가지

- ❑ 성폭력은 신체적 접촉이 컸을 때에만 해당된다.
※ 신체적 접촉 뿐 아니라 언어적 행위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 ❑ 피해자는 오직 여성 뿐이다. (특히 매력적인 젊은 여성)
※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 ❑ 성폭력은 가해자의 성적 욕구에 의해서만 생겨난다.
※ 성적 욕구보다 지배적 공격적 욕구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 학내 성폭력의 경우 아는 사람으로부터 96% 발생

❑ 가해자의 특성은 전형적이다. (특정 나이, 학력, 직업, 성격 등)

※ 특정 직업이나 나이 등에 관련 없이 다양한 사람이 될 수 있다.

❑ 주로 피해자의 유혹적 옷차림이나 행실 때문에 발생한다.

※ 피해자의 행동 특성과 상관 없이 발생한다.

❑ 무시하면 없어진다.

※ 무시는 가해자에게 동의 또는 묵인으로 간주되어 더 심해질 수 있다.

❑ 문제를 제기해봤자 피해자만 손해를 본다.

※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면 된다.

❑ 여자들은 은근히 강간당하기를 바란다.

성폭력의 유형

1. 언어적 유형

❑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

❑ 성적 관계를 강요 혹은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전화통화

❑ 성적으로 모독하는 호칭 사용

❑ 옷차림, 신체, 성적 활동 등에 대한 지나친 언급

❑ 불쾌한 성적 농담 혹은 모욕

❑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교제 강요

❑ 성관계 암시하며 화점 평가나 업무 수행을 관련짓는 말

2. 물리적 행동유형

- ❑ 완하지 않는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암시, 요구하면서 구석으로 밀어붙이기
- ❑ 같이 식사할 때無理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 손으로 성행위 등을 나타내는 몸짓

3. 적대적 환경 조성

- ❑ 성폭력·성차별적 언행은 개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문제가 아니다.
 - ※ 개개인이 그러한 언행을 하게 만들어 주는 사회적 환경 조성도 매우 중요
- ❑ 동참하지 않는 것이 다가 아니라 방관하는 태도 역시 성에 대한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데 한몫하고 있고 더불어 그러한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마저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실이다.

- ◆ 공공장소에서 누드, 포르노 사진이나 포스터 등을 공개하는 행위
- ◆ 음란한 눈빛, 결눈질하거나 모욕적 휘파람 소리를 반복하는 행위
- ◆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
- ◆ 음란한 쪽지, 편지 보내는 행위
- ◆ 원치 않는 동행(술집, 호텔 등)을 강요하는 행위

4.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성폭력

- ❑ 고정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전제로 한 사고나 말, 행동 등은 결과적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제약과 억압으로 작용한다.
 - ◆ 가사 노동을 여성만의 일이라고 여기거나 강요하는 일
 - ◆ 단체, 모임에서 유독 여성에게만 잡일을 시키는 경우
 - ◆ 여자는 예뻐야....사내자식이 무슨...하는 정형화된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의 강요
 - ◆ 힘들고 거친 일을 남성에게만 전가

5. 성적 대상화 유형

- ❑ 한 인간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인격에 관계 없이 몸매, 혹은 외모로 평가하여 타인을 sex 상대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
 - ◆ 휘파람, 교성, 침삼키는 소리 등 성에 관련된 음란한 소리를 여성 앞에서 내는 것
 - ◆ 여성이 지나갈 때 휘파람을 불거나 외모를 가지고 평가
 - ◆ 음담패설, 정력가, 음란가요 부르기
 - ◆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규정하는 속어(예:영계)의 남발
 - ◆ 남성에게 “코가 크면 정력이 세다”하는 식의 발언

6. 온라인 성폭력

- ❑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외모와 성적 취향, 음담패설 등)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여 상대방의 통신 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 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하는 성 권력의 발현.
- ❑ 명시적으로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이 아니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를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포함.

❑ PC통신, 인터넷 뿐만 아니라 음란 전화도 포함

- ◆ 시각적으로 야한 그림 보내기
- ◆ 대화방이나 메모, 메일을 통해 원치 않는 성적 언어 표현
- ◆ 인터넷 포르노 유포 (예 : 오양 섹스비디오 사건 등)
- ◆ 사이버 스토킹 (여성 홈페이지에 지속적인 협박성 메일 보내기 등)

대학내 성폭력 유형

1. 학내 성폭력의 정의

학교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근, 성적 접촉의 요구에서부터 기타 성적인 성격의 언어적 육체적 행위가,

- ❑ 첫째, 그러한 행위의 수용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의 조건이 되는 경우
- ❑ 둘째, 그러한 행위에의 거부가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 셋째,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학업 생활의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기 저하 및 불쾌한 분위기를 조성할 의도를 띠었거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2. 교수-학생간 성폭력

교수가 학생들에게 군림하며 갖고 있는 권력은 어마어마하다. 학위수여를 결정하고 진로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대학원에서는 학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 교수에게 잘못 보이면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관계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함부로 행동하기 어렵다.

- ❑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학점이나 학위 인정, 논문 통과, 진로 등으로 유인하여 성폭력을 (시도)하는 경우
- ❑ 성폭력에 대한 거부로 학점이나 학위 인정, 논문 통과, 진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 ❑ 강의실, 교수 연구실 등에서 성폭력 행위를 통해 개인의 학업 능력을 방해하거나 거부감을 주는 학업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
- ❑ 신체 접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동 등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사회적·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3. 선배-후배 혹은 동기간 성폭력

- ❑ M.T나 새내기 배움터, 술자리, 교실, 동아리 등의 공공장소에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 술을 따르게 하는 식의 성적 접촉이나 강간 등을 포함한 성폭력
- ❑ 학생회실, 뒤풀이 장소, MT, 새터, 하숙방, 도서관, 식당, 강의실, 복도, 화내 한적한 곳, 셔틀버스, 동아리방, 화장실 등 피해장소는 다양함

4. 그외 성폭력

- ❑ 모르는 관계에서: 셔틀버스, 화장실, 도서관 등에서의 성적 접촉과 같이 고의적인 행위로 음란한 눈빛, 성기 노출, 음란 전화, 팩스나 통신 등을 이용한 음란물 게재 등이 있다.
- ❑ 개인적 관계에서: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동반하는 데이트 강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행위, 이와 유사한 행위를 강제로 하는 것

성폭력 피해자들이 받는 영향

1. 심리적 영향

- ❑ 정서적 불쾌감과 충격을 경험
- ❑ 자기상과 자존감에 상처
- ❑ 자기비하와 열등감, 심한 우울감 및 자책감, 자살 시도.
- ❑ 피해자의 성적 정체감 왜곡, 이성에 대한 혐오감과 공포감 형성
- ❑ 주의집중곤란, 의욕저하, 대인관계 기피, 자포자기적 행동, 과도한 음주 등의 후유증 경험

2. 신체적 영향

- ❑ 두통, 식욕상실, 소화불량, 불면증, 수면장애, 월경불순 등 초래
- ❑ 여성의 질이 파열될 수 있다.

- ❑ 원하지 않는 임신과 임신중절로 인한 고통, 불임증 초래 가능
- ❑ 성병 감염 등

3. 사회적 영향

- ❑ 피해자의 업무 능력, 혹은 학습 능력 및 의욕 저하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사회·국가적 손실 초래

성폭력 예방

1.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할 점

- ❑ 이성을 당신과 똑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 존중하는 마음이 집 갖기
- ❑ 이성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이성들이 남녀관계에서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기
- ❑ 성차별적 농담이나 이성을 비하하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위의 언어적 유형 예시 참조)
- ❑ 상대방 이성의 '아니오'는 분명한 거부 의사로 받아들여 존중해 주기(분명한 거부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 거부 의사로 받아들일 것)
- ❑ 상대방이 가만히 있다고 동의로 간주하지 말고 분명히 물어보고 대답을 들어야 한다.

2.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할 점

- ❑ 평소 자신의 성행동에 대한 지침 정하기
- ❑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이나 요구가 있으면 분명히 거부 의사 표시
- ❑ 여성의 경우 데이트 상대로 피해야 할 남성 특성
 - ◆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성격
 - ◆ 여성 일반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성격
 - ◆ 당신의 삶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려는 특성
 - ◆ 술을 많이 마시고 술을 마셨을 때 행동 통제가 안되는 특성 등

3. 데이트시 주의점

- ❑ 데이트 비용은 반반 부담
- ❑ 예/아니오 의사 표시 분명히 하기(침묵을 동의로 오해할 수 있다)

성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

1. 강간 성폭력 피해 직후의 대처 방법

- ❑ 안전한 곳으로 이동
- ❑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은 통풍이 잘 되는 종이봉투에 보관(증거자료)
- ❑ 강간 피해의 경우, 목욕하지 않은 채 산부인과에 가야 한다.
(증거 채취와 외상 치료, 성병 감염 여부, 임신 가능성 여부 확인 필요)
- ❑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 받기
- ❑ 고소는 가능한 빨리 결정(공소 시효 1년)
- ❑ 후유증이 오래 가도 자책하지 않는다. (후유증은 인간으로서 당연)

2.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일 경우 대처 방법

① 가해자 직접 만나기

- ❑ 피해자는 가해자를 만나기 전 친구나 다른 사람들과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정서적 지지, 혹은 필요한 정보 제공 가능
- ❑ 직접 만날 시 혼자 혹은 친구와 같이 만날 수 있다.
- ❑ 가해자를 만난 사실과 결과에 대해 기록 남겨두기

② 가해자에게 편지 쓰기

- ❑ 가해자에게 직접 말로 표현하고 싶지 않을 때
- ❑ 감정적 논쟁을 피하고 싶을 때
- ❑ 편지에는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생각 및 느낌을 정리
- ❑ 편지 복사 및 편지 발송 사실을 주변에 알림

3. 비공식적 대처 방법

- ❑ 기존 생활에 되도록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할 때
- ❑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 노출을 꺼릴 때
- ❑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원할 때
- ❑ 상황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느낄 때
 - ◆ 피해자가 대학 내 담당자에게 사건을 신고하고 담당자가 개입
 - ◆ 담당자는 당사자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만 담당.
 - ◆ 피해자가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가진다.
 - ◆ 공식적 기록 無
 - ◆ 가해자에게 공식적 처벌이나 경고 내려지지 않음

4. 공식적 대처 방법

- ❑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성폭력의 강도가 심하다고 생각될 때
- ❑ 담당자 중재 이후에도 가해자의 문제 행동이 여전할 때
- ❑ 가해자의 맞대응적 요소가 오히려 증대될 때

- ◆ 피해자는 학내 처리 절차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법원에 제소 가능(증거를 잘 갖추어야 한다.)
- ◆ 교내 성폭력 예방 대책 위원회에 신고(공식 기록 有)

5. 온라인 성폭력 대처 방법

① 사전 대비책

■ 개인 정보 관리

- ☞ 무성(無性)적인 ID나 대화명 사용
- ☞ 비밀번호는 자주 바꾸기
- ☞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것만 기입하거나 비공개

■ 통신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주의하기

- ☞ 누구에게나 친절할 필요는 없다.
- ☞ 당신이 원치 않는 사람과 반드시 대화할 필요는 없다.
- ☞ 원치 않는 메일에 답할 필요 없다.
- ☞ 대화에 불편감을 느꼈다면 언제든지 통신을 그만둘 권리가 있다.

■ 통신상에서 만난 사람을 직접 만나는 일은 신중하게!

- ☞ 친구와 함께 가거나 공적인 장소에서 만나기
- ☞ 당신이 어디 가는지 주변에 알리기

■ 실명이나 주소, 전화번호, 사진 등을 보낼 때 주의

- ☞ 가능한 한 낯선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 좋다.

■ 내키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는다.

■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 쪽지/메일 수신 거부, 특정 내용/발신자에 따라 자동으로 전자우편 삭제 등의 기능을 이용

② 우리 모두 해야 할 일

■ 오프라인에서와 똑같이 상대방을 존중

■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 대화실 등에서 온라인 성폭력 가해자를 보면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돕는다.

■ 통신 회사와 당신의 안전, 프라이버시에 대해 이야기한다.

만약 이용자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을 통신상에서 희롱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그들이 온라인에서의 개인의 안전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본다.

- ❑ 동호회 등에 가입해 있다면 블랙리스트/신뢰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공유한다. 또한 온라인 성폭력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안전한 통신 공간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한다.

③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을 해올 때

- ❑ 가장 먼저 화면 저장을 한다.
- ❑ 최선의 대응책으로 무시한다.
무한정 기다리지 말고 더 나빠질 거 같으면 지금 행동 취한다.
- ❑ 소극적 대응
 - ☞ 방 바꾸기 (상대방이 예측 가능한 경로를 따르지 않기)
 - ☞ 1시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다.
 - ☞ 대화명 바꾸기
 - ☞ 당분간 컴퓨터 사용 안하기
- ❑ 적극적 대응
 - ☞ 원치 않는 행동임을 말하고 멈출 것을 요구
 - ☞ 대화실에서는 공개적으로 경고

(성폭력을 멈추지 않으면 상세한 내용을 회사나 신고 기관 등에게 알릴 것을 경고)

- ☞ 단호한 경고 편지 보내기
- ☞ 모든 상호작용가능성 차단(쪽지/메일 수신거부 환경설정)
- ☞ 피해상황과 관련한 모든 메일, 갈무리한 파일을 시간 날 짜와 함께 자세히 기록하여 보관
- ☞ 통신회사 등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용도 모두 보관
- ☞ 당신의 생활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
- ☞ 전자우편에 응답 안하기
- ☞ 상대방이 보낸 메일은 바이러스 체크 후 열기

- ❑ 상대방이 행한 온라인 성폭력의 증거물들을 공개해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 사회적 직업적 결과를 감당하도록 한다.

④ 경고 편지는 이렇게!

- ❑ 분노, 두려움, 위협을 보이지 말고 쓰기
- ❑ 당신이 이 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단호하고 냉정하고 조용히, 요점을 명확하게 표현

■ 한번 더 보내면 회사 측에 알릴 것을 경고

■ 메일 보낸 후 상대방과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중지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반응할 경우 그의 행동이 계속되거나 법정으로 가게 될 경우 가해자는 커뮤니케이션이 쌍방 의사소통이라고 나올 수 있다. (당신의 친구도 그와 의사소통하지 않도록 주의)

6. 피해자의 권리

①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

- 직업, 나이, 이전의 성경험, 피해시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권리
- 사건과 관련된 질문만 받을 권리
- 이전의 성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을 권리
- 고소시 자신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권리
- 수사, 재판과정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가

족, 변호사, 상담원 등과 함께 배석할 권리

- 사생활 보호, 심리적 안정을 위해 비공개 재판을 신청할 권리
- 가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증언하기 어려울 경우 가해자의 퇴장을 신청할 권리
- 가해자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고 보상을 요구할 권리

② 진료 과정에서의 권리

- 병원에서 검사받는 동안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를 받을 권리
-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지식과 배려가 있는 의료진을 연계받을 권리
- 모든 검사 과정, 서류, 절차 등에 관해 쉬운 말로 설명들을 수 있는 권리
- 진료 이후 예상되는 증상들을 충분히 알 권리
- 친구, 가족, 상담원 등이 진찰실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권리
- 성폭력 피해에 관련된 증거물 수집과 진단서 발부를 요청할 권리
- 진료 결과에 대한 기록을 발부받을 권리

③ 일상적 권리

- ❑ 성관계가 아닌 폭력의 피해자로 대우받을 권리
- ❑ 순결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 ❑ 어떠한 상황이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권리
- ❑ 불면, 불안, 악몽, 두려움, 초조함, 분노 등 피해 후 증상들을 갖고 표현할 권리,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비정상적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 ❑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받을 권리
- ❑ 피해에 대해 주변인에게 말할 권리, 또는 말하지 않을 권리
- ❑ 성폭력상담소에서 비밀을 보장받으며 전문적 상담을 받을 권리
- ❑ 피해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모든 정보와 지지를 주변, 관련단체, 사회로부터 제공받을 권리
- ❑ 두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권리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1. 학내

- ❑ 학생생활연구소 산하 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
(학생생활연구소 구내 2303)
e-mail : sccouns@uoscc.uos.ac.kr
- ❑ 인문학관 1층 5102호 여학생 상담실 (구내 2291)로 사건 접수.
- ❑ 총여학생회
 - ☞ 구내 2367
 - ☞ 홈페이지로 접수 (학교 홈페이지에서 시대인마당 선택 후 접속)

2. 외부

- ❑ 한국 성폭력 상담소 2263-6471
- ❑ 한국 여성 민우회 2269-5763~5
- ❑ 한국 여성의 전화 2269-2962~5
- ❑ 한국 여성단체연합 2273-9535
- ❑ 성폭력 상담소 529-4271

부록 1. 대학내 성폭력 사례 모음

1. 교수-학생

서울대 신교수 성폭력 사건

92년 6.5부터 수차례에 걸쳐 NMR 기기 조작을 위해 20-30차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우조교)의 의자 옆 또는 등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가해자(신교수)의 등에 가까이 대고 포옹하는 듯한 자세를 한 채로 피해자의 앞에 있는 컴퓨터의 키보드를 자신이 치기도 하고 피해자의 어깨나 등에 가해자의 손을 올려놓거나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기도 하고, 피해자가 기기를 작동하고 있을 때 옆에 있다가 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자의 옆에서 위 기기를 조작하면서 의도적으로 가해자의 몸 일부분을 접촉시키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고등법원까지 올라갔던 이 사건은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 가해자 신교수가 패소한 채 마무리되었다.

96년 S대 교수 사건

96년 S대 교수가 한 여학생에게 워드 부탁을 하고 일을 끝낸 후 고맙다며 저녁을 사주고 술을 마심. 술을 2차까지 요구했으며 교수가 자기 집에 가자고 함. 계속해서 이상한 교수의 태도에 당황한

여학생이 울면서 도망감. 친구들이 알고 총여학생회에 알렸으나 피해자가 공개하기를 원치 않아 사건이 종결됨.

K대 교수 성폭력 사건

96년 12월 S교수가 한 학생에게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제안. 평창동에서 먹은 후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함. 집이 왕십리인데도 파주로 차를 몰아 길이 잘못되었다고 하자 서울로 나가는 길목에서 여러 번 차를 돌리다가 어느 여관 앞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자고 제안함. '나를 존경하면 같이 가자며 할 얘기가 있다고 유인함. 여관에서 술을 시켜놓고 학업 얘기를 하다가 애인이 있느냐, 성관계 경험 이 있느냐고 물으며 음란 비디오를 틀고 거부하는 여학우를 강간함.

2. 선배 혹은 동기간

MT에서

○○은 봄 정기 MT를 감. 보통 그렇듯이 방은 하나 빌렸으며 밤이 되어 술을 많이 마시게 됨. 93학번 여학우가 술을 많이 마시고 피곤해서 방에 먼저 가서 잠을 자게 됨. 자고 일어나니 바지 지퍼가 내려와 있어서 옆을 쳐다보니 같은 동아리 96학번 여학우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누워 있었음. 96학번 후배를 다그쳤더니 같은 동아리 91학번 선배가 자고 있는 93학번 선배를 강간하고 여자 후

배는 자신도 당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워하며 자는 척 했다고 함. 이 사건은 동아리내 공론화시켜 동아리 총회를 통해 가해자는 동아리에서 제명당하게 됨.

신입생 환영회에서

○○과의 신입생 환영회 중 95학번 선배가 찍어 둔 후배에게 성추행 한 사건.

이 선배는 그 여자 후배가 전화를 걸러 가자 쫓아가서 전화박스 앞에서 기다림. 그리고 나오는 후배를 다짜고짜 붙잡고 키스를 함. 이 후배는 어쩔 줄 몰라서 계속 그 선배를 피해다님

새터에서

S대 97년 새터에서 모 단대에서는 장기자랑 시간에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서 성기 모양을 만들고 여학생이 가운데 앉아 압박사를 뽐으며 사정하는 것을 흥내내었다. 그 상황에 있던 윤전의 한 학우가 불쾌하다는 표시를 했으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재미있으면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며 여학생들의 반발을 무시했다.

또 모 단대에서는 실무단 여학생이 공지 사항을 전하려고 방에 들어갔을 때, '여/자/다'를 환호하며 '웃/벗/어'라고 집단적으로 말했다.

3. 그 외 모르는 사람

도서관 화장실에서

96년 8월 S대 도서관에서 95학번 남학생이 '너만 봐' 라는 외설 연극을 보고 청테이프와 칼을 들고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었다. 타학교 학생이 언니를 따라 도서관에 왔다가 어떤 남학생이 칼을 들고 위협을 가하자 놀라 도망갔고 강간하려던 남학생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총여학생회와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합의해 가해자가 공식적인 실명대자보를 쓰고 자퇴, 피해배상금 지급, 성폭력 상담소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 등의 내용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도서관에서 생기는 일들

도서관에서 가해자는 옆자리 여학생이 눈치채지 않도록 떨어진 물건을 줍는다든지 자는 척 하면서 교묘히 여학생에게 접근하여 육체적 접촉을 시도하곤 한다. 피해자는 주로 불쾌하게 생각하여 자리를 옮기거나 나가버리고 이후 가해자를 잡으려 해도 이미 가해자가 자리를 떠난 후라 잡기 힘들다.

밤늦은 시간 강의실에서

97년도 K대 의류학과 한 여학우가 밤 9시경 친구를 배웅하고 밤을 새기 위해(의류학과와 의 경우 졸업작품전 준비로 밤을 새며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다시 강의실로 돌아와 불을 켜니 어떤 남자가 강

의실 귀퉁이에 숨어 있었다. 지금 뭐하냐고 물으니 친구를 찾으러 왔다고 하면서 황급히 도망쳤다. 그리고 10시 30분쯤 로비에서 서성대는 남학생과 또 마주쳤으며 조금 뒤 화장실로 가니 문 한칸이 잠겨 있어 밑으로 보고 그 사람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잠시 후 대책을 강구하고 다시 가보니 남자가 없었다. 이상히 여겨 화장실 청소용구가 들어 있는 문을 열어보니 구석에 남자가 숨어 있었다. 학생회 측에서는 회계학과 88학번으로 밝혀진 그 남자의 사과만 받고 그냥 돌려보냈다고 한다.

화장실에서

99년도 모 대학 대학원동 여자 화장실에 한 남학우가 들어가 여학우를 훑쳐보거나 화장실 밑 틈으로 손을 넣어 여학우의 엉덩이를 만지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놀란 여학우는 졸도까지 하였으나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다.

4. 본교에서 있었던 사건들

'97년 5월 22일

피해자는 당시 대동제 중 시화전을 진행하고 있었고 저녁에 시화전 철수 한 뒤 야외 음악회를 보러 갔다가 선배들과 등나무 열 잔디밭에서 뒤쫓이 하던 중 학생회관 1층 화장실로 갑. 사람들이 많아 3층 여자화장실로 올라감.

3층 여자화장실에는 두어명의 여학생이 있었고 창옆 안쪽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막 일어서서 옷을 입고 바지 자크를 올리려던 순간 밖에서 문을 두드렸다. 누군가 급해서 혹은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해 두드려나 생각하고 다시 노크를 막 했을 때 과격하게 문이 열리면서 가해자인 남학생이 들어왔다. 피해자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질렀고 혹시 자기가 남자화장실에 잘못 들어왔나 하는 당황함이 느껴져 "여기가 남자화장실이에요?" 하고 두어번 물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목을 붙들고 벽쪽으로 몰아부치며 "아니요, 저 걱정되서 왔어요"라고 몇번 대답함.

그때 마침 목격자가 들어와 벨트를 잠그고 밖으로 나왔고, "이 개자식아 이름이 뭐야?" 라고 물었고 가해자는 또 정말 걱정이 되서 왔다고 말하다가 추궁하자 00학과 97학번 전창영이라고 대답했다. 그때까지 최소한 걱정이 되어 왔다는 가해자의 말을 믿고 싶었고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나 너 기억한다. 알겠니? 나중에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고 목격자와 가해자가 말하는 사이 동아리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막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가해자가 도망감. 조금 있다가 총학에서 찾는다고래 가보니 총학에 가해자와 15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가해자가 거짓으로 이름을 댔다는 걸 그때 확인함.

가해자는 술이 많이 취한 상황이라 당시의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성차별적 사고로 발생한 사건 (본교와 동덕여대 MT 사건)

97년 10월 본교 학우 5명과 동덕여대 학우 5명 정도가 우이동 MT촌으로 MT를 가게 되었다. 저녁 먹을 무렵 본교 학우들과 동덕여학우들이 계속 산발적으로 오게 되어 인원 파악 및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11시경부터 꽤 많은 사람이 모여 술을 마셨다. 새벽 4시부터 동덕 학우들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귀가하고 새벽 6시경에는 동덕 학우들이 3명만 남게 되었다.

이에 본교의 J(가해자, 92학번)는 “너희 과 원래 이러냐? 다 가네”라고 시비조로 말을 하자 H(피해자, 동덕학우)가 “일이 있으면 갈 수도 있지 왜 그래요?”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가해자는 기가막히다는 표정으로 술을 마시며 계속 “이래도 되는거냐”라는 질문을 시비조로 하자 동덕 학우가 “이런 MT는 처음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갑자기 가해자가 동덕 학우들에게 일어서라고 소리치고 일어나자 H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갖은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다른 여학우 K가 말로 하라며 항의하자 K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구타했고 같이 있던 다른 여학우 A가 놀라 쳐다보자 가해자는 “뭘 끌어봐”라고 하며 주먹으로 폭행을 계속 가했다. 자고 있던 본교 학우들까지 발로 차서 깨워 “이런 x년들이랑 조인트 올리면 다신 오지도 마 똑바로 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모두 무릎을 꿇게 했다.

MT는 그 MT에 참여한 개개인의 행동이 존재하고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이며 남녀의 성비 문제로 개개인의 의사와 행동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해자가 성비를 문제삼은 것은 MT에 참석한 여학우들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남성들이 즐기는 공간에 부차

적으로 존재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본 것이며 이것은 전형적으로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된 주체로 바라보는 성차별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록 2

서울시립대학교 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 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대학 내에서의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에 “서울시립대학교 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성폭력의 의미)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란 범죄행위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모든 언행을 뜻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교에 재직중인 모든 교수와 교직원 및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 변화는 이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교수 중에서, 그 밖의 위원은 본교 교수, 교직원, 또는 관계전문가 및 학생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단, 학생위원은 2인

으로 하되, 총여학생회의의 추천을 통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전문적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는 1인의 간사를 두며 학생생활연구소의 상근조교로 한다.

⑥ 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경우 총장이 정하는 임시 위원으로 대체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성폭력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2. 성폭력과 관련된 제반 대책의 수립 및 개선 방향 정립
3. 성폭력 사건의 처리 방안 연구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연 2회 회의를 개최한다.

③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성폭력 사건이 신고되어 상담소에서 조사 후 위원장에게 보고가 된 경우 3일 이내에 위원장은 임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가위원의 서명을 받

아 학생생활연구소 산하의 여학생상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성폭력 사건의 처리) ① 성폭력 피해자는 학생생활연구소 산하의 여학생상담실에 성폭력사건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또는 여학생상담실의 상근조교는 신고된 성폭력 사건에 관한 진상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방법·과정·처리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을 따로 둔다.

④ 위원회는 보고된 성폭력 사건을 심의하여 그 처리 방법을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법적 구제 수단에 관한 정보 제공 또는 필요한 조치
2.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 또는 필요한 조치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 대한 사과, 교육, 봉사, 배상 등의 권고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제9조 (비밀의 준수) 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참여한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등) 대학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칙) ①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②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